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8.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인원	수행업무	근무형태	임기	근무지역
상임 감정 위원	1명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	주5일	3년	서울본원

※ 지원서 마감 결과 단수 지원일 경우 연장공고 또는 재공고 실시 가능 / 수행업무 세부 내용은 『채용 직무 설명자료』 참조

□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8 (상동) 9. 「벼후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임용 자격 기준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외과계 또는 응급의학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공학과는 의학과 등, 학력은 학사 이상으로 추후 절차 진행 간 관련 면허증·자격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3

근로 조건

□ (보수 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 (임기) 임기 개시일로부터 3년(근무성과 등에 따라 연임 가능)

※ 임기시작일은 최종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근무 지역)

- (서울본원)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 (근무 시간) 주 5일 근무(평일 09시 ~ 18시)

□ 공고 및 지원서 교부

- 공고 기간: 2024. 8. 1.(목) ~ 8. 22.(목)
- 공고매체(온라인 공고)
 - 우리 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

□ 지원서 접수(위 온라인 공고매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기간: 2024. 8. 1.(목) 09시 ~ 2024. 8. 22.(목) 18시까지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서비스혁신팀)
 - ※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T타워)
-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방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1차 전형】 서류심사

- 대상 : 접수기간, 접수방법 등을 준수한 지원서 접수자
- 심사방법 : 지원 동기, 연도별 경력기술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24. 9. 13.(금)
 - 방법 : 합격자(모집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내용 : 서류심사 합격 통보, 면접심사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 증명서류 제출기간: 2024. 9. 13.(금) ~ 9. 23.(월) 18시까지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변경시 합격자에게 변경된 증명서류 제출기간 통보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 제출 불가)
 - 제출기간 내 증명서류 미제출시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2차 전형】 면접심사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예정)일 : 2024. 9. 30.(월) ~ 10. 11.(금) 중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자 확정 통보
- 장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 심사방법 : 개별 면접(다대일 면접)을 통해 전문성·역량, 조정 및 통합능력, 리더십, 공정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2024. 10. 16.(수)
- 방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2024. 10월 중

※ 임용 예정일은 최종 합격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은 예정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구분	사유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전형절차 만점 기준으로 매 전형마다 가점 적용 (5~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각 전형절차 만점 기준으로 매 전형마다 가점 적용 (5%)

- ※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적용
- ※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며, 가산점 항목 중복 존재시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부여

□ 지원자(지원서 접수시) : 지원서 등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응시 전) : 증명서류

【공통 제출서류】

- 경력(재직) 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 면허증, 자격증 사본 각 1부(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최근 1년 내역)
 - * 발급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 결과 1부
 - * 발급처 : 보건복지부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1부
- 기타 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원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류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

※ 증명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지원자 확인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하여야 함

□ 최종 합격자 : 임용동의서 등

- 임용동의서 1부 및 ※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취업 제한 관련 체크 리스트 1부 ※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채용 신체검사서, 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

- 지원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서와 증명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요청하는 증명서류는 지원자가 작성한 사항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접심사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후에라도 채용절차상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용 예정일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면직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지원자(최종 합격자 제외)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개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공개모집 관련 문의》

- 담당자: 02-6210-0195
 - 문의시간: 평일 09시~12시, 13시~18시
- ※ 전화 외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